

의안
번호

210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11. 21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210호

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07.

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4.

2. 제안이유

- 계절과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의 제약 없이 어린이들이 생활권 내의 안전한 실내 놀이공간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,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
(안 제3조~제8조)
- 다.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~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,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3. 09. 27. ~ 2023. 10. 17.
 - 의 견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제정안은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에 제약 없이 어린이들이 생활권 내의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1)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로 아동전용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2)에서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노력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는바, 본 조례 제정은 「아동복지법」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□ 주요내용

- 본 제정안은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‘어린이’, ‘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’, ‘사용료’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,

1)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

7. 아동전용시설: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터, 아동회관, 체육·연극·영화·과학실험전시 시설, 아동휴게숙박시설,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·오락,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2)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·오락 시설, 교통시설,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-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안 제4조는 서울형키즈카페 운영 매뉴얼 3)에 따라 놀이시설 이용대상을 9세 미만의 어린이와 보호자로 하고 있고,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는 인솔자 동반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.
-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사용료,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입장의 제한, 행위의 제한, 이용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고, 놀이터의 기구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 배상에 관한 사항 등 일반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서울형 키즈카페의 운영매뉴얼의 일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절함.
- 안 제9조와 제10조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5년 이내에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볼 때, 본 제정안은 미세먼지, 폭염 등 어린이 야외놀이환경 악화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외부환경의 제약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들에게 연령에 맞는 다양한 놀이체험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,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됨.
- 또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, 놀이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.

3) 서울형키즈카페 운영 매뉴얼 P 20/21

가. 운영기준

1. 이용대상

- ▶ 0~만9세 아동 및 보호자(단, 놀이돌봄서비스는 만36개월 이상 아동 대상 제공)
- 이용대상은 아래 명시된 ‘이용연령군 설정 방식’에 의거하여 구분
- 단,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따라 0~만 9세 범위내에서 이용 연령을 제한할 수 있음.